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 이용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당사자					
이용자 (갑)	성명		등급 (인증번호)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기타	☒ 일반 ☐ 경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제공자 (을)	시설명	전원일기	시설종류	노인요양(입소)시설	
	시설장	한 동 일 (인)	연락처	054)854-0800	
	주소	경북 안동시 와룡면 가야길 20-17			
대리인 또는 보호자 (병)	성명	(인)	관계	'갑'의 ()	
	주민번호		연락처	자택	
	주소	휴대폰			

제1조 【 목 적 】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② ①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 ④ 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정원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 ⑥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3조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금 】

- ① 매월 이용료는 익월 15일까지 납부하기로 한다.
- ② '갑'(또는 '병')은 본인일부 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 ③ '갑'의 이용료 납부는 농협 351-1067-5551-13 (예금주:전원일기요양원)으로 한다.
- ④ '갑'(또는 '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 시설급여(1일)

구 분		1등급	2등급	3,4등급
요 양 급 여		90,450	83,910	79,240
비급여	식재료비(1식)	2,000		
	간식비(식비에포함)	0		
	이/미용료등	시설부담		

*.외출·외박의 경우 식재료비를 차감한다. 단, 식재료 수급상 1일전에 시설에 통지하여야

그렇지 않은 경우 전액 청구한다.

◇ 세부내역(30일 기준) : 3등급, 4등급

구 분		금 액(원)	내 역
개인 부담비용	합 계	658,440	
	요양급여비용(20%)	478,440	79,240 x 30일 x 20%
	식사재료비/간식비	180,000	6,000 x 30일
	상급침실 이용료		

제4조 【 입소자(갑)의 권리·의무 】

① 입소자(갑)의 권리

가.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나.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다.입소 어르신은 직원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라.입소 어르신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마.입소 어르신은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바.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갑)의 의무

가.월 이용료 납부

나.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다.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라.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제5조 【 신원인수인(병)의 권리·의무 】

① 신원인수인(병)의 권리

가.신원인수인은 입소자에 대한 시설의 서비스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나.신원인수인은 입소자에 대한 각종의 서비스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신원인수인은 언제든지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에 대해 접견할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병)의 의무

- 가.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 나. '입소자'에 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 다. 인적 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
- 라. 입소자의 퇴소시 입소자의 신병을 시설로 부터 인계받아야 한다.

제6조 【 계약의 해제 】

① 입소자(갑)의 해제

'갑'과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시설(을)의 해제

- 가.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나.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다.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은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7조 (이용료 등의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①. 계약체결 후 계약자(보호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유선으로 통보한 후 입소계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는 것으로 재계약을 대신 한다.
- ②. 계약 기간중 이용료 부담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유선으로 계약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자(보호자)가 변경 내용에 대해 동의하면 입소계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는 것으로 재계약을 대신한다.

제8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의 내용

입소 어르신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 가.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 나.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 다.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
- 라. 간호 및 처치 서비스
- 마. 환경관리 서비스
- 바. 식사 및 목욕 서비스
- 사. 기타 어르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②.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 : 제3조와 같다.

제9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

①.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

- 가. 전염병 또는 임종시 일시적으로 특별실을 사용할 때,
 - 환자는 외부와 격리한다.
 - 침실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하여 출입시 소독을 한다.
 - 간호사 근무시 매시간 바이탈을 측정하여 관찰한다.
 - 간호사 퇴근이후에는 야간근무자가 3시간 단위로 체온과 맥박을 측정한다.
 - 필요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 나. 입으로 음식을 삼킬 수 없어 경관식을 제공하는 경우.
 - 흡인성폐렴 방지를 위해, 튜브관등 용기를 매회 소독한다.
 - 용기는 일주일 사용 후 교체한다.
 - 뉴케어를 1일 3회 (아침-점심-저녁)이상 제공한다.
 - 필요시 유제품, 과일즙을 제공한다.

②.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비용

- 가. 특별실 사용에 따른 비용 : 무료
- 나. 경관식 제공에 따른 비용은 다음과 같이 청구한다.
 - 1일 3회의 뉴케어 제공 비용과 일 6,000원의 식대의 차액을 월단위로 계산하여 그 비용을 계약자(보호자)에게 제시하고, 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시 합산하여 청구한다.

제10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 처리절차)

- ①. 입소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필요시 협력병원과 축탁의와 상의하여 그 지시하는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긴급 시에는 119를 이용하여 일단 후송한다.
-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계약자(보호자)에게 별도 징수한다.
- ④. 시설은 입소자가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상시 지체없이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11조 【 퇴소 】

- ① '을'은 제5조 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갑'과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③ '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한 (또는 '병') 계좌로 지체없이 지급한다.

제12조 【 입소물품 】

갑'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을'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제13조 【 면회 및 외출 · 외박 】

- ① '갑'의 면회시간은 매일 09:00시부터 21:00까지로 한다
(단, '갑'과 '을' 또는 '병'이 동의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
- ② '갑'은 외출 · 외박시 사전에 '을'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을'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갑'이나 '병'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 ④ 외출 · 외박 중 '갑'에게 신체적 · 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 또는

'병'은 '을'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4조 【 시설관리 】

- ①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을'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제15조 【 건강관리 】

-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갑'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갑'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갑' 또는 '병'에게 별도 징수한다.
- ④ '을'은 입소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 관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⑤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 ⑥ '을'은 '갑'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상시 지체없이 '병'에게 통보한다.

제16조 【 시설물 배상 】

-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 ②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 위급시 조치 】

-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갑'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을'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병'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을'이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을'은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병'과 정산할 수 있다.

제18조 【 임종 및 장례 】

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는 경우와 무연고자로 구별하여 정한다.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는 경우

가.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장례는 '병'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② 무연고자

가.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을'의 책임하에 결정한다.

나.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다.1개월 이내 관할 동(읍,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제19조 【 식사 및 간식 】

① '을'은 1일 3식 및 간식을 '갑'에게 제공하며, '갑'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수급자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제20조 【 요양실의 배정 】

갑'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갑'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갑' 또는 '병'의 의견을 반영하여 '을'이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 ③ '갑'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으로 한다.
- ④ '갑'은 '을'이 수집·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22조 【 기록 및 공개 】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 【 배상책임 】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가.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나.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다.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가.시설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나.'을'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다.'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라.'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24조 【 계약기간중 변경사항 】

- ① 계약체결 후 '갑'(또는 '병')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유선으로 '갑'(또는 '병')에게 통보한 후 이 계약서 후면에 그 내용을 기재하는 것으로 재계약을 대신 한다.
- ② 계약기간중 '갑'의 이용료 부담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유선으로 '갑'(또는

변경일자	변경내용	통지수령자
